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방위원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를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
■ 유용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239호)

2025. 2.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류 승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유용원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1. 6.
3. 회부연월일 : 2025. 1.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사회복지요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요원이 복무 기관에 비치된 일일복무상황부에 매일 서명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복무기관의 장이 사회복지요원의 출퇴근 근태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의 수기 관리 방식은 관리의 정확성이 낮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어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적 복무관리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무청장은 소속기관장이 사회복지요원의 출퇴근, 휴가·결근 등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강화하고 사회복지요원의 성실한 복무 이행을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2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사회복지요원 소속기관의 장이 사회복지요원 출퇴근, 휴가·결근, 지각·조퇴 등의 복무 현황 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병무청장에게 복무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2항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사회복지요원 복무 관리·감독 등) ① (생략) <u><신설></u>	제31조의2(사회복지요원 복무 관리·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병무청장은 소속기관장이 사회복지요원의 출퇴근, 휴가·결근, 지각·조퇴 등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u>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78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① 제20조, <u>제31조의2제2항</u> , 제34조의2제5항, 제70조제1항·제3항, 제81조 및 제95조에 따른 병무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8조(병무행정사무의 위임) ① ----- --- <u>제31조의2제3항</u> ----- ----- -----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현재 복무기관의 장은 소속된 사회복지요원의 출·퇴근 상황 등을 기록하기 위한 일일복무상황부를 비치하여 개인별 복무 상황을 작성하고 해당 사회복지요원에게 매일 서명하게 하는 방식으로 복무 상황을 관리하고 있음.¹⁾

-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 규정」상 복무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복지요원의 출퇴근 근태관리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복무 기관 자체적으로 전자적 복무 현황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많지 않은 실정임.

<복무기관 사회복지요원 근태 관리 현황>

(2024. 5. 기준. 단위 개)

합 계	일일 복무상황부	전자적인 방법			
		소 계	지문	출입카드 (출퇴근기록기)	기타
12,794	12,737	57	33	20	4

□ 이와 같은 수기 방식의 사회복지요원 복무 현황 관리는 복무 상황 관리자에 따라 기록의 일관성 및 정확성이 낮을 우려가 있고, 이력 보존 등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복무 현황 관리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적 복무 관리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1)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9조(일일복무상황부 관리) ① 복무기관의 장은 규칙 제41호 서식의 일일복무상황부를 비치하고 사회복지요원에게 매일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6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무일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복무기관의 장은 일일복무상황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결근·지각 및 조퇴는 해당하는 일자에 사유를 기록한 후 확인 서명
2. 연가·병가·정원휴가·특별휴가 및 공가 등은 그 기간에 해당하는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사이에 양측으로 화살표를 하고 그 중앙에 사유를 기록한 후 확인 서명
3. 허가되지 않은 지각·조퇴 및 결근은 무단지각·무단조퇴 및 무단결근으로 정리하고 확인 서명
③ 복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요원의 출퇴근 근태관리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개정안은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휴가·결근, 지각·조퇴 등의 복무 현황 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복무 관리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수기 관리 방식이 가지는 단점을 극복하고, 복무기관 간 복무 현황 관리 업무가 통일성 있게 수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²⁾

□ 참고로 행정기관이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입법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주요 입법례>

법률명	조 문 내 용
군인사법	제63조(인사기록)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군인의 인사기록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 업무를 <u>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u> 할 수 있다.
가사 근로자법	제19조(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가사서비스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u>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u> 할 수 있다.
112신고 처리법	제13조(112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경찰청장은 112신고의 접수·처리, 112신고 정보의 공유·이관 및 공동대응 등에 필요한 <u>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u>
국민 체육진흥법	제18조의13(징계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및 임직원의 징계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u>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u>
건설기술 진흥법	제18조(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계를 갖추고 그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건설기술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u>

2)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시스템 구축 비용 추계 : 약 6억원 소요 예상(병무청 설명)
- 개발용역비 : 약 1억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 약 3억원, 하드웨어 구입비 : 약 2억원

- 다만, 「병역법」 상 사회복지무요원의 복무 관리 주체를 ‘복무기관의 장’으로 지칭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 제31조의2제2항 조문 중 ‘소속 기관장’을 ‘복무기관의 장’으로 수정할 필요는 있어 보임.
- 기획재정부는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 여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협의 사항이고, 정보화전략계획을 통한 사업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정보시스템 구축을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기 보다는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07